'베른협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출판인 유익형씨, 「저작권 심포지움」에서 문제제기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한지 1년 남짓. 한국의 UCC가입을 위해 통상압력을 가했던 미국이 오는 3월1일부로 베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측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베른협약 가입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구랍 14~1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장인숙)가 마련한 저작권 심포지움(수안보호텔)에서, 출판인 柳益衡씨(汎文社대표)는 「베른협약과 우리 저작권계」라는 발표를 통해 "소급적용만 되지 않는다면 베른협약 가입을 굳이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외국저작물 보호 1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UCC가입 1년의 출판계(노양환 · 우신사 대표)와 음악계(라음파 ·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를 회고하는 발표도 있었다. 다음에 유익형씨의 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미국 · EC의 '가입압력' 예상돼

한국이 87년 10월1일부로 UCC에 가입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사라기보다는 미국의 通商압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사는 오늘의 위상에서 문화국가로서 창작활동을 존중하고 자주적으로 질높은 교육용 출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여겨진다.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소위 리프린트(복제출판)를 10년 소급해 보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나 아직도 적법한 절차의 부재로 그 실현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며, 한편 유럽공동체(EC)국가들도 연합해서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지적소유권에 말미암은 통상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베른협약이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11월16일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미국도 89년 3월1일부로 베른협약 가입국이 되는 까닭이다. 한국정부가 비록 5공화국 때였지만 미국과 약속한 리프린트의 10년 소급보호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인지한 미국측에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베른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할 것은 自明한 일이며, 한편 우리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EC의 여러나라도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현재 가입해 있는 UCC에는 소급보호의 의무가 없으나, 베른협약에는 현재 살아 있는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소급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소급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베른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도 국내법으로 불소급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베른협약의 규정(18조 3항)에 의거 국제저작권을 소급보호하지 않고서도 동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른협약은 UCC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의 UCC가입을 '강요'했던 미국이 오는 3월1일부로 베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불소급 원칙'만 지켜진다면 굳이 가입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이 불소급을 전제로 베른협약에 가입했다면 우리에게 굳이 베른협약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우리의 신 저작권법도 베른협약에 보다 가까운 법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불소급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통상마찰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베른협약을 기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정부나 학계가 보다 신중히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불소급 원칙은 베른협약 가입의 대전제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베른협약 가입을 계기로 UCC와 베른협약의 통합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새로운 범주의 지적소유권의 등장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히 예시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모색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1952년에 비로소 UCC에 가입했는데, 그 전까지도 같은 영어권인 캐나다 · 영국 등과 동시 출판을 함으로써 베른협약의 실질적 혜택을 누려왔다. 또 남미와는 별도로 '汎美저작권연합'을 조직, 필요에 따라 국가별로 저작권 쌍무협정을 맺어왔다. 미국은 UCC에 가입한 후에도 베른조약에 가입하라는 끈질긴 국제적 압력 속에서 36년이나 버티어 온 셈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외국저작물 보호 1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마련한 저작권심포지움 전경. (88년 12월14~15일 수안보호텔)

일본의 경우는 1899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가입경위야 어쨌든, 가입 당시의 일본 저작권법에 '번역권 10년 유보' 조항이 있어 그것이 그대로 베른협약에 받아들여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외국의 원서보다는 외국저작물의 번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외국의 출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식으로 계약 출판되지 않으면, 그후에는 자유로이 번역출판이 가능했다. 이 '10년 유보' 조항은 1971년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사라졌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1970년 이전의 외국 출판물에는 계속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무려 71년 동안이나 교묘히 운영했다. 베른협약도 1886년 이후 몇차례 개정을 거쳐 일본의 경우처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지만, 일본은 기득권을 1970년까지 누릴 수 있었다.

베른협약은 UCC보다 더 엄격하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보호양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 스톡홀롬에서 베른협약과 UCC의 통합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아울러 후진국을 위한 특별배려가 논의됐었으나, 선진국 출판업자 등의 로비활동으로 1981년의 빠리 개정까지 미루어졌었다.

앞으로 영국과 EC가 공동으로 다시 통합을 제기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국제관례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보다도 보호기간이 짧고, 불소급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고, 납본 · 등록 등 公示의무가 있는 UCC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현재 가맹국 80개)을 설득하는 작업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른협약이 불소급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돋움한지 32년만에, 즉 명치유신 이후에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으니, 건국 40년이 넘은 우리나라로서도 가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UCC가입 1년 남짓한 지금도 외국저작권의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단속이나 법적인 조치가 미비하다는 미국측의 불만이 많다.

지난 1년 동안의 저작권 거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1987년 이전에 출판된 것은 저촉되지 않으므로 우리 출판계에 아직은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며, 앞으로 2, 3년의 추세를 보아야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리프린트를 사용하는 대학교재는 한국에 복사권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교과서값이 인상되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번역이나 국내학자의 저술로 당연히 전환돼야 할 것이므로 과도기의 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출판계로서는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만약 앞으로 미국이나 EC에서 한국의 베른협약 가입을 종용한다거나 압력을 가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가입해 있는 UCC조약조차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소급을 전제로 베른협약에 가입한다 해도 그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지키지 못한다든가 않는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도리어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서울올림픽으로 새로이 국제사회에 부상한 문화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